

제23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참석결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11.13.(일)~11.21(월) / 포르투갈 파로(하이브리드)
- (참석자) 47개 체약당사자, 5개 협력적 비체약당사자, 6개 정부간 기구, 26개 비정부간 기구, 2개 비체약 당사자(대면 약 400명, 화상 약 250명)
 - *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수석대표) 외 8명
- (회의사진)



□ 주요 의제

- (패널1) 눈다랑어 TAC 및 어획한도, 어류군집장치(FAD) 통제
- (패널2) 참다랑어 관리절차 구성요소, 동부 참다랑어 어획할당
- (패널3) 남방 날개다랑어 TAC 및 어획한도
- (패널4) 남방 청상아리, 바다거북, 남·북방 황새치, 상어 피닝 금지
- (이행위원회) CPC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및 이행개선 방안
- (상설작업반) 자국민의 조치 이행 촉진, 국제공동검색제도 수립
- (기타) '23년 위원회 예산,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 절차 개선

I. 주요 회의 결과

1. 패널1

-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연장
 - 눈다랑어 TAC '23년 62,000톤, FAD 금어기 72일(1.1~3.13)*
 - * 한국 눈다랑어 어획한도 : 자발적 한도 + '21년 미소진 이월(10%) - 대만 전배(223톤)
 - '23년에 회기간 회의 2차례(3.27~31, 6.19~23) 개최하여 논의 계속

2. 패널2

- 참다랑어 관리절차 채택
 - BR 모델, 3년 관리주기, PGK* 60%, 관리주기 간 변동률 +20/-35%
 - * Probability of Green Kobe : 자원상태가 양호한 상태(Kobe 녹색영역)일 가능성
- 동부 참다랑어 TAC 및 할당('23~'25년)
 - TAC 40,570톤, CPC 유형(연안개도, 연안, 원양조업)별 차등적 증가*
 - * 한국 참다랑어 쿼터 : 기본쿼터 221톤(이전비 21톤 ↑) + 대만 전배(50톤) = 271톤

3. 패널3

- 남방 날개다랑어 TAC 및 할당('23~'26년)
 - TAC 28,000톤, CPC 어획한도 각 20% 증가(대만은 10%)
 - * 한국 남방 날개다랑어 어획한도 : 기본한도 170톤(이전비 30톤 ↑) + '21년 미소진 이월(25%)

4. 패널4

- 남방 청상아리, 바다거북 혼획 저감, 남방·북방 황새치 제안서 채택
 - *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제안서 미채택

5. 상설작업반

- 자국민 이행 촉진 제안서 채택, 국제공동검색제도 제안서 미채택

II. 세부 회의 내용

□ 패널1

1. 열대다랑어 조치 → 연장

○ (배경)

-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금년 2차례 회기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CPC 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뿐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
- * 눈다랑어 TAC 증가 및 할당 방식, 선망선 FAD 통제, 감시·감독·통제 조치 등
- 본 특별회의에 의장(가나)은 회기간 회의에서 제기된 CPC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장안을 제출하였고, EU, 일본, 남아공도 제안서를 제출함

[제안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EU	<p>① CPC 구분 : 16-01 쿼터표 내 CPC와 그 외 CPC</p> <p>② 1단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1 쿼터표 내 CPC의 경우, [(16-01 어획한도)-(2015-2020년 평균어획량)]을 유보량(common pot)으로 반납 - 그 외 CPC들은 16-01 4항에 명시된 기준점(연안개도CPC는 3,500톤, 그 외 CPC는 1,500톤) 초과 시, 동 기준점을 적용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2015-2020년 평균어획량 적용 후, 2020년 어획량 대비 감축량을 유보량으로 반납 <p>③ 원양조업CP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조업CPC들은 1% 추가 감축하고 감축량을 유보량으로 반납 <p>④ 큰 수확국의 할당을 작은 수확국에게로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 5% 이상 가진 CPC 할당을 소규모 수확국에게 이전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감축을 적용 및 유보량으로 반납 <p>⑤ 최종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어획량 대비 30% 이상 감축된 연안CPC의 한도 조정 - 유보량은 역사적 어획이 있는 모든 CPC에게 0.7%까지 할당 - 유보량 중 형평 쿼터 및 영세 쿼터를 각 5%씩 제외하고, 특히 중간 소득 및 저소득 CPC들에게 우선적으로 재할당

일본	<p>① CPC 유형에 따라 눈다랑어 어획한도 증감(기간: 23-25년) - 연안개도CPC 2% ↑, 연안CPC 2% ↓, 원양조업CPC 4% ↓</p> <p>② 미소진 어획한도 재분배 방식 - 기본 어획한도 5%까지 이월 허용 (※ 현행: 10%) - 어획한도 10% 이상 미소진하면, 2년 후 기본 어획한도 5% 반납 - 어획한도 90% 이상 소진하면, 2년 후 전체 미소진량(어획한도 미소진 CPC 반납분) 중 일부(기본한도 10%까지) 사용 요청이 가능하고, 전체 미소진량은 비례적으로 배분 - 2년 연속 어획한도 10% 이상 미소진하면, 익년부터 이월량을 제외한 미소진량만큼 기본 어획한도 감축</p> <p>③ 상기 규칙은 소규모 수확국(21-01 4항d) CPC에게는 미적용</p>												
남아공	<p>현재 명시적인 한도 없는 소규모 수확국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어획량이 그룹 할당량 또는 개별 CPC 장려 한도(1000톤)를 초과할 경우 그룹 할당량 조정 또는 해당 CPC에 대한 명시적인 한도 설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33%;">하위 그룹</th> <th style="width: 33%;">개별 CPC 장려 한도(톤)</th> <th style="width: 33%;">그룹 할당량(톤)</th> </tr> </thead> <tbody> <tr> <td>개발도상 연안 CPC</td> <td>1,000</td> <td>TAC의 8%</td> </tr> <tr> <td>개발된 연안 CPC</td> <td>1,000</td> <td>TAC의 3%</td> </tr> <tr> <td>ICCAT 비연안 CPC</td> <td>1,000</td> <td>TAC의 2%</td> </tr> </tbody> </table>	하위 그룹	개별 CPC 장려 한도(톤)	그룹 할당량(톤)	개발도상 연안 CPC	1,000	TAC의 8%	개발된 연안 CPC	1,000	TAC의 3%	ICCAT 비연안 CPC	1,000	TAC의 2%
하위 그룹	개별 CPC 장려 한도(톤)	그룹 할당량(톤)											
개발도상 연안 CPC	1,000	TAC의 8%											
개발된 연안 CPC	1,000	TAC의 3%											
ICCAT 비연안 CPC	1,000	TAC의 2%											

○ (주요의견)

CPC	주요내용
온두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지지하고, 현행 조치 TAC(6.2만톤)와 어획한도 합산량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TAC 증가는 반드시 필요 · 큰 수확국들의 할당을 개도국에 이전 · FAD 금어기 단축 (고정 1개월 + 선택 1개월)
세네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지지하고, 서아프리카 제안서 토대로 할당 논의 필요 · 이월은 16-01 CPC만이 아닌 a)-c)그룹 모든 CPC가 가능해야 함 · FAD 금어기 현행 유지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지지하고, 소규모 수확국에 대한 명시적인 한도 설정에 반대 · FAD 금어기 현행 유지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수용 가능 (회기간 회의 입장: 7.5만톤) · EU 할당안이 서아프리카, 일본안보다 연안개도국에게 유리 · 현행 FAD 조치에 대한 과학위 평가 전까지 현행 금어기 유지 필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FAD 통제 없이는 TAC 증가 반대 · 소규모 수확국 한도는 소규모 수확국이 제안해야 함 · FAD 금어기 확대 (고정 3개월 + 선택 1개월) · 선별적 어획하는 대형 선단에 대한 별도 취급 필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만톤 지지하고 추가적인 FAD 통제 필요 · FAD 세트 수 제한이 마련되면 개수, 금어기 제한은 불필요할 것 · 미소진 어획한도의 소급적 처벌(EU안)은 수용 불가. 미래에 어획한도 미소진 시 어획한도 감축은 수용 가능 · CPUE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승CPC들의 할당이 감축되면 데이터 감소로 자원평가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수용 가능 · 미소진 어획한도의 소급적 처벌은 수용 불가 · 16-01 CPC들의 어획한도 논의 시작점은 16-01이 되어야 함 · 연승이 감축한 어획한도를 치어 어획하는 선망에 할당하는 것에 반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어획량만을 기준으로 어획한도 설정하는 것에 반대 · TAC 증가 상황에서 어획한도 감축은 수용 불가

○ (결과)

- 여러 CPC는 제안서가 늦게 제출되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할당은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 TAC, 할당, FAD, MCS 조치가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함을 언급함
- CPC들은 작년 정기회의와 금년 회기간 회의에서 표명한 입장을 반복했을 뿐, 주요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현행 조치(21-01)를 1년 연장하고 내년에 보다 긴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1차) 3.27~31, (2차) 6.19~23

→ '23년 눈다랑어 TAC 62,000톤, FAD 금어기 72일(1.1~3.13)

□ 패널2

1. 참다랑어 관리절차(MP) → 채택

○ (배경)

- 대서양 참다랑어의 새로운 자원관리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관리전략 평가(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과정이 '14년부터 진행됨

[전통적인 자원평가와 새로운 관리절차 비교]

구 분	전통적인 자원평가 (Best Assessment)	새로운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
운영 모델 (OM) 특징	단순함 (B_{MSY} , F_{MSY}) 최선의 결과 중심 (정치적)	포괄적 (다양한 성과지표 활용) 복수의 결과 도출 (보다 과학적)
TAC 설정	정치적 협상에 의한 도출 (협상 비용 수반, 보존에 불리)	합의된 규칙에 따른 자동적 도출 (협상 비용 절감, 보존에 유리)
동·서부 계군 혼합*	미고려. 각 계군에 대한 별도의 자원평가 및 관리조치 실시	고려. 양 계군에 대한 단일한 자원평가 및 관리조치 실시

* 혼합(mixing) : 동부 계군이 서부 해역에서 어획되고 서부 계군이 동부 해역에서 어획되는 현상. 서부 해역에서 어획되는 동부 계군 비중은 최대 70%에까지 이르는 반면, 동부 해역에서 어획되는 서부 계군 비중은 1% 미만임.

- 금년 4차례 MSE 회의를 통해 관리절차 주요요소에 대한 관리자들과의 선호를 확인하고 예비관리절차들의 압축 및 수정 작업을 한 후, 본 특별회의에 최종 결정사항들*을 상정함

* 1) 최종 MP 후보: BR과 FO

2) MP 옵션 사항: ① MP 관리주기 - 2년 또는 3년, ② 자원상태가 양호한 상태일 가능성(PGK: Probability of Green Kobe) - 60% 또는 70%

○ (경과)

- BR과 FO 중,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CPC들은 BR을 선호하였음
- 관리주기의 경우,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CPC들은 3년을 선호하였음
- PGK의 경우, 서부CPC들(미국, 캐나다, 일본)은 60%를 선호한 반면, 동부CPC들은 65% 또는 70%를 선호하였음

- EU는 초기에 PGK 70%를 지지한 CPC들이 합의를 위해 65%로 내려왔으므로 서부CPC들도 유연성을 보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 서부CPC들은 관리절차 수립으로 인한 혜택을 서부CPC들은 동부CPC들과 동일하게 향유하지 못함*을 언급하며, BR 선정, 관리주기 3년은 수용할 수 있지만 PGK 60%는 포기할 수 없음을 표명
- * 서부는 동부에 비해 자원량이 적고 자원상태가 불량함. 새로운 MP 적용 시 동부 TAC는 중장기적으로 3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서부는 PGK 60%에서만 현재 수준의 TAC를 유지할 수 있고, PGK 60% 초과 옵션 선택 시에는 TAC 감축이 요구됨
- 동·서부 CPC간 PGK에 대한 입장 차이 해소를 위해, 일본은 최초 주기(phase-in 단계)에는 PGK 60%, 65%에 관계없이 동·서부 TAC가 동일(동부 40,570톤, 서부 2,726톤)하므로, 서부 60%·동부 65% 또는 동·서부 모두 62.5%로 하는 작업을 최초 주기 동안 진행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현장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과학위 의장에게 질문하였고, 과학위 의장은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 EU는 그러한 작업은 공식 과학위 회의에서 결과가 정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하며 제안에 반대함

○ (결과)

- 의장은 MP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서부는 어차피 TAC 변동이 없으므로, MP 미채택의 불이익은 동부에게 돌아감을 강조하며 합의를 종용하였고, 동부 CPC들이 PGK 60%를 수용하여 MP 채택됨

[대서양 참다랑어 관리절차]

모델	BR (Butterworth · Rademeyer 개발, 동·서부 10개 지표 사용)
자원상태	동·서부 계군 모두 Kobe 녹색 영역 위치 가능성이 60% 이상
안전성	동·서부 계군 모두 자원상태가 B_{LIM} 미만일 가능성이 15% 미만
관리주기	동·서부 계군 모두 3년
안정성	동·서부 계군 모두 관리주기 간 TAC 최대변동폭은 +20%/-35%
최소 TAC 변동	TAC 변동폭이 서부 50톤, 동부 1,000톤 미만일 경우 TAC 유지

2. 동부 참다랑어 할당 → 채택

○ (배경)

- 관리절차 채택 후 동부 TAC 증가분(4,570톤)의 할당 방법 논의

○ (경과)

- 패널2 CPC들은 특별회의 전 및 회의 중 자국의 할당 증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제출하였음
- 할당 논의가 시작되자, 거의 모든 CPC들은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자국의 할당 증가 당위성을 피력하였음*

* 다른 연안개도국 대비 적은 할당, 연안국임에도 적은 할당, 자국 해역에 회유량 증가, 과학조사 기여, 권고에 명시된 역사적인 할당비율 회복 문구 등

- EU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같다고 언급하며 ① 회복기간 동안 가장 많은 희생을 한 것은 EU이고, ② EU 어업인 중에는 쿼터 감축으로 어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으며, ③ 역사적인 할당비율을 찾고자 하면 EU는 59%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④ 알제리의 경우, 14-04에서 5%까지 증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할당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CPC들은 모두 비례적 증가를 할 것을 제안함
- 의장은 마지막 패널2 세션에서 의장 할당안을 제시하며 할당안 산출 근거*를 설명하였음

* 연안국과 원양조업국 구분, 연안개도국과 연안국 구분, 1천톤 미만 작은 수확국 고려

- 일부 CPC들은 의장안에 불만족을 표하며 의장안을 수용하기 어렵고 시간이 없으면 내년에 다시 할당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의장은 할당안을 1년만 적용하고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EU는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가면 EU는 과거 비율 59%를 요구할 것이라며 CPC들의 합의를 종용하자,
- 불만족한 CPC들도 마지못해 의장안을 수용함

○ (결과)

CPC	현재(21-08) 연간 키퀴터(t)	'23-25년 연간 키퀴터(t)	증가량(t)	증가율(%)	비고
EU	19,460	21,503	2,043	10.5	연안국
모로코	3,284	3,700	416	12.7	연안개도국
일본	2,819	3,114	295	10.5	원양조업국
튀니지	2,655	3,000	345	13.0	연안개도국
튀르키예	2,305	2,600	295	12.8	연안개도국
리비아	2,255	2,548	293	13.0	연안개도국
알제리	1,655	2,023	368	22.2	연안개도국
이집트	330	513	183	55.5	연안개도국
노르웨이	300	368	68	22.7	연안국
한국	200	221	21	10.5	원양조업국
아이슬란드	180	224	44	24.4	연안국
알바니아	170	264	94	55.3	연안개도국
중국	102	112	10	9.8	원양조업국
대만	90	101	11	12.2	원양조업국
시리아	80	129	49	61.3	연안개도국
영국	-	63	63	-	연안국
나미비아	-	50	50	-	연안개도국
미할당	115	38	-77	-	-
합계	36,000	40,570	4,570	12.7	-

□ 패널3

1. 남방 날개다랑어 조치 → 채택

○ (배경)

- 현행 조치(16-07)가 '22년까지 연장된 후, 과학위 조언('20)*을 토대로 남아공이 TAC 증가 및 TAC 증가분을 할당하는 제안서**를 제출함

* 초과어획 상태가 아니고 과도어획 중이 아님. TAC 2.8만톤은 '33년에 PGK 83%

** (TAC) 2.4만톤 → 2.8만톤 (할당) 모든 CPC 할당 20% 증가(대만은 10% 증가)

○ (경과)

- 남아공은 가장 큰 할당을 갖고 있는 대만은 할당 증가율이 10%이지만 할당 증가량은 가장 많음을 언급함

- EU는 일률적인 비례적 증가가 아니면 할당비율 변경을 일으키므로 할당 방식에 관해 더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함

* 주: EU는 EU가 가장 많은 할당을 갖고 있는 동부 참다랑어 할당 논의 시 동일한 할당 방식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

- 대만은 남아공이 제안한 할당안을 수용할 수 있으나 미래에 선례로 작용해서는 안됨을 보고서에 기록 요청함

- 일본은 패널3 회원국이 아닌 4개 CPC가 할당을 받고 있는 것은 ICCAT 관행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4개 CPC는 패널3에 가입하거나 할당을 포기할 것을 요청함

* 코트디부아르, 앙골라, 세인트빈센트 앤 그레나딘, 퀴라소

○ (결과) 4개 CPC는 패널3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제안서 채택됨

CPC	'23-'26년 연간 어획한도(t)
대만	10,340
남아공	5,280
나미비아	4,320
브라질	2,600
EU	1,765
일본	1,630
우루과이	530
벨리즈	300
중국	240
한국	170
영국	120
코트디부아르	120
앙골라	60
퀴라소	60
필리핀	30
TAC	28,000

* 1) 테이블에 열거되지 않은 CPC는 어획량을 30톤으로 제한

2) 미소진 어획한도 이월: 기본 어획한도 25%까지 허용

3) 전체 TAC 미소진분에서 CPC 미소진 이월분을 제외한 잔량이 있을 경우, CPC 기본 어획한도 25%까지 사용 요청 가능

□ 패널4

1. 남방 청상아리 조치 → 채택

- (배경) 남방 자원상태도 북방과 동일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 EU가 작년에 채택된 북방 조치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함

* 자원 회복조치 1단계로서, 23-24년에 남방 청상아리의 선상 보유 금지. 24년에 과학위에서 어업폐사량을 고려하여 이후 연도들에 대한 보유 가능성 조연 제공

○ (경과)

- 남아공과 나미비아는 남방 자원상태가 보유금지를 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고려하에 제안서에 반대함
- EU와 영국은 '23-'24년에 일부 보유가 가능*하도록 제안서를 수정함

* '12-'21년 기간 어획량이 500톤 이상인 CPC들은 동 기간 어획량의 40%까지, 500톤 미만인 CPC들은 동 기간 어획량의 60%까지 보유 허용

- 이후 남아공은 옵서버 승선(EM 포함) 하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움을 언급함
- EU는 북방 조치 논의 시 적극 참여한 남아공이 협상의 늦은 단계에서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양승 시점에서 생존한 청상아리를 죽여서 보유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을 강조함

- (결과) 옵서버 요구사항은 '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제안서 채택됨

CPC	'12-'21년 평균어획량(톤)	'23-'24년 허용보유량(톤)
EU	1,258	503
나미비아	640	256
브라질	347	208
남아공	256	154
...
일본	103	62
한국	6	4

- (기타) 일본은 '모든 양륙은 CITES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주 추가에 반대(중국도 동의)하여 동 각주 삭제됨

2. 바다거북 부수어획 저감 조치 → 채택

- (배경) 작년에 미채택된 제안서*로서, 미국 외 EU도 제안서를 제출함
 - * 일본은 환형낙시 사용이 청상아리 어획율을 높일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
 - 제안서 공통내용 : 수심 100m 내 연승어업은 ① 환형낙시, ② 지느러미 물고기 미끼, ③ 기타 위원회 승인 조치 중 1가지 이상을 이행*
 - * 바다거북 분포 범위 밖인 북위 55도 이북 및 남위 35도 이남 조업선박은 적용 면제
 - EU 제안서 : 지중해는 바다거북 서식이 적고, 지중해수산위원회 (GFCM)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므로 조치의 지중해에 대한 적용 면제
- (경과) 미국과 EU는 거북이 대서양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조치 적용 면제를 남위 45도 이남으로 축소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위원회 조치는 개별 연구가 아닌 공식적인 과학위 조언을 근거로 해야 함을 이유로 반대함
- (결과) 원안대로 북위 55도 이북 및 남위 35도 이남으로 합의하고, '23년에 과학위에서 범위의 남방경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로 함

3. 남방 황새치 조치 → 채택

- (배경) 과학위 조언을* 토대로 TAC 변경을 위해 EU가 제안서를 제출함
 - * 1) TAC 14,000톤으로는 자원이 '33년까지 Kobe 녹색 영역 위치 불가능 2) 본 조언은 미보고 방류폐기량, 쿼터 이월 및 이전(남북 계군 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미반영
- (경과) 미국과 브라질은 “왜 TAC만 감축하고 개별 CPC 어획한도는 감축하지 않는가?”를 질문하였고, EU는 TAC와 모든 CPC 어획한도 합산량 간 간극은 북방 자원의 경우가 더 크고, 일부 CPC들은 어획한도를 모두 소진하지만 일부 CPC들은 미소진하고 있음을 언급함
- (결과) TAC(1.4만톤 → 1만톤)와 이월비율을 감축(20% → 10%)하고, 개별 CPC 어획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함

4.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조치 → 미채택

○ (배경) 15년 이상 동안 매년 제출*되고 있는 제안서로서, 일본과 중국의 반대로 미채택되고 있음

* 금년 제안 CPC : 벨리즈, 브라질, EU, 노르웨이, 남아공, 영국, 미국, 가봉, 니카라과, 캐나다, 세네갈

- 제안서 주요내용 : 첫 양륙 지점까지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 현행 조치(04-10)는 선내 보유하고 있는 상어 몸체 총중량 대비 지느러미 총중량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절단 허용

○ (주요의견)

CPC	주요내용
벨리즈	현행 조치(04-10)만으로는 상어 보존,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닝 금지가 필요함
EU	WCPFC에서 5% 조치에 대해 이행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논의되었음. 일본은 WCPFC에서는 입장을 변경하였음
일본	① 피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WCPFC에서는 공해승선검색 시 지느러미 비율 측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대안적인 접근에 합의했으나, ICCAT은 동 제도가 없음 ③ 일본 선박이 태평양에서 지느러미 절단을 하여 중대한 처벌을 부과한 적이 있으나 대서양에서는 한 적이 없음 ④ 일본은 유연성을 보여 어업 관행을 토대로 선어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거절되었음 ⑤ 대서양에서 상황이 바뀌면(*) 입장 변경을 고려할 것 * ICCAT 개정협약 발효. 개정협약에서는 위원회 관리어종이 "참치 및 참치류"를 넘어 위원회가 지정하는 어종("ICCAT 어종")으로 확대
중국	지느러미 절단 금지는 보존에 유익함이 없음. 해상에서 절단하는 것이나 육상에서 절단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음
미국	5% 비율 확인 어려움과 승선검색제도는 무관함. 5% 모니터링 어려움은 다른 수단으로도 확인되고 있음

○ (결과) 일본과 중국의 반대로 미채택

□ 상실작업반

1. 자국민 보존관리조치 이행 촉진 → 채택

- (배경) 작년에 미채택된 EU 제안서로서, 금년 IMM 회의에서도 논의 되었으나 작년과 같이 중국은 제안된 내용*으로는 반대 입장 유지
 - * IUU 어업 활동 관련 책임이 있거나, 이득을 취하거나, 지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적절한 조치(현행 06-10 문구)를 넘어선 '실효적이고 억제력 있는 조치' 실시
- (경과)
 - 중국은 ① 자국민에 통제는 수산당국의 권한을 넘어서고, ② 협약에는 자국민 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③ 본 조치가 국내법 개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을 언급함
 - 일본은 작년과 같이 중국 의견에 동의함
 - EU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될 것임을 언급함
- (결과) "CPC 국내 현행 법령 또는 향후 입법될 법령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하는 문구로 합의하여 제안서 채택됨

2. 국제공동검색제도 수립 → 미채택

- (배경)
 - 작년 연례회의 및 금년 IMM 회의에서 캐나다는 서부 대서양에만 적용되는 공해 승선검색제도*를 제안하였으나, 중국이 반대함**
- * 1) 검색 우선순위 선박: 옵서버 미승선 대형 참치 조업선, 국제법·국내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
- 2) 무력 사용: 검색관 안전에 대한 위협 또는 임무 수행을 방해받는 경우에 가능, 비례 원칙 준수 필요(공해어업협정 문구와 동일)
- ** ICCAT 협약과 국제공동검색제도에 관한 권고(75-02)는 (참여 희망) 체약당사자 간 적용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의무적인 승선검색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 EU, 미국, 일본은 작년 연례회의 및 금년 IMM 회의에서 본 제안서를 지지하고 서부 대서양만이 아닌 협약수역 전체에 적용되는 제안서로 수정되길 요청하였음
- 캐나다는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즉, 공해)에 적용되는 제도로 범위를 확장하여 제안서를 다시 제출함

○ (주요의견)

CPC	주요내용
일본	① 본 제도는 불법 해상 전재 근절에 기여할 것 ② 검색보고서 웹사이트 비공개 영역 등록은 다른 RFMO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므로 삭제 요청
중국	비체약당사자 참여 조항 삭제 요청 (제도는 체약당사자 간에만 적용)
모로코	황새치와 참다랑어 어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황새치와 참다랑어 어업에는 적용 면제 요청
우루과이 벨리즈	① 일부 CPC들은 검색 수행 역량이 없어, 불평등한 제도가 될 것 우려 ② 제안서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에 협력하고자 함
캐나다	① 타 어업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통합하기 위한 전환 기간을 제안 ② 검색선 파견 역량이 없는 CPC도 검색관 교환으로 참여 가능
EU	① 자발적인 검색관 교환은 참다랑어 어업에서도 유용성이 확인되었음 ② 개도국들은 우려할 것이 아닌, 자국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역량 구축 기회로 생각해 줄 것을 요청

○ (결과)

- 우루과이 등 개도국들의 반대로 상설작업반 세션에서 미합의되었으나,
- 총회 의장(EU)은 폐회일 총회 세션에서 본 제안서 논의를 재개하여, 우루과이는 상설작업반에서 논의가 종결되었어야 함을 언급함
- 캐나다, 미국 등은 이행 시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타결을 시도했으나,
- 우루과이는 더 많은 시간이 아닌, 역량 전수 및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제안서에 끝까지 반대하여 미채택됨

□ 이행위원회

1. CPC 이행평가

CPC	사안	주요의견
세네갈	황새치 및 날개다랑어 수출량이 세네갈 어획한도를 초과	(EU) 세네갈의 불이행은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IUU 근절 의지에 의문. 기국 및 항구국으로서 책임 강화 필요 (세네갈) ① 기국 외 시장국도 책임이 있음 ② 자국 통제 시스템은 EU와 같이 만들었으므로 시스템 검토에 EU 협력 필요 ③ 공해 조업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 지원 필요 ④ 기국으로서 필요한 제재를 했으나 선박들의 기국 변경으로 조치에 어려움 ⑤ 로그북 데이터는 국내법에 따라 공개 불가
나미비아	날개다랑어 이행표와 과학위 제출(Task I) 데이터 간 불일치	(나미비아) 과거에 양륙량을 이유로 쿼터 증가 요청이 거절된 후, 양륙능력을 증가시켜 양륙량이 예상을 넘었고 이중 집계로 추정. 당국 역량 강화 노력 중
연승조업 CPC	일부 CPC들의 오퍼버 승선율(5%) 미준수	(의장) 대안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CPC들은 권고 요구에 따라 과학위로부터 승인 필요 (미국) 권고 요구사항인 국내 오퍼버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출 이행률은 33%에 불과함 (일본) 미이행 CPC들은 EM 작업반에 참여해야 하고 EM으로 이행 필요 (EU) EM 작업반에서는 각 권고 최소기준보다는 도구 상자를 만들고 있음. 개도국 지원 방법도 논의 필요

2. 기타 사안

- 통합 온라인 관리시스템(IOMS) 적용에 관한 권고 → 채택
 - '23년부터 모든 보고사항을 IOMS를 통해 하도록 하는 권고 채택
 - 이행 사안 후속조치 계획(안) → 채택
 - 결의 16-17 요구에 따라 불이행 경중 구분 및 후속 조치 계획에 관한 문서를 이행위 의장과 사무국이 개발하여 CPC 의견을 반영한 후 채택
- * 불이행 경중 : 1년-경미한 불이행(MI), 2년-상당한 불이행(CO), 3년-중대한 불이행(SI), 4년 이상- 매우 중대한 불이행(VS)

□ 재정위원회

1. 과학회의 통역

- (배경) 개도국들은 개도국 과학자들이 위원회 과학 작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회의에도 불어·스페인어 통역 제공을 요청함
- (결과) 통역을 제공할 회의 범위별 예산을 검토한 후 옵션4*로 결정함

* 열대다랑어 어종 그룹, 상어 어종 그룹, 통계 소위원회, 소형 다랑어 어종 그룹 회의.
소요 예산: 249,650 유로

2. 2023년도 위원회 예산

- (배경) 사무국은 작년 회의에서 채택된 '22-'23년 예산에 증가 요인*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함

* 환율 상승으로 UN 기구 급여 표준(달러)에 따른 조정 및 스페인 현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사무국 직원 및 과학 작업 인건비 증가, 대면회의 재개로 인한 출장비용 증가, 과학회의 통역 요청 비용 추가

- (결과)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위원회 예산	4,788,677 유로 (약 66억 6,354만원)	5,598,444 유로 (약 77억 9,035만원)	16.91
한국 분담금	32,807 유로 (약 4,565만원)	37,380 유로 (약 5,202만원)	13.94

3. 개정협약 비준 현황 보고

- (배경) '19년에 채택된 팔마 데 마요르카 의정서 비준 현황을 보고함
- (결과) 금년 벨리즈가 비준하여 비준한 체약당사자 수는 총 5개*

* EU,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벨리즈. 개정협약 발효 요건: 체약당사자(52개) 3/4의 비준

□ 총회

1. 기후변화 제안서 → 채택

- (배경)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행동 및 작업반 수립을 제안(미국)*

* 공동제안CPC: 영국, 세네갈, 한국, 이집트, 남아공, 브라질, 캐나다, 노르웨이

○ (주요내용)

- 과학위에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조치를 조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 장려
- '23년에 본 결의하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4개 패널 및 과학위 합동 전문가 회의(3일) 개최

2. 위원회 절차 개선 작업반 문서

- (배경) ① 의장단 선출 과정, ② 연례회의 제안서 제출 규칙, ③ 회의록 작성자(Rapporteur) 지원에 관해 회기간 작업반 논의내용을 검토

○ (주요내용)

의제	주요내용
의장단 선출	① 연례회의 6개월 전까지 사무국에서 CPC들에게 입후보를 요청하고 CPC들은 2개월 전까지 후보 지원 ② 가능한 한 1개 CPC가 복수의 의장직에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균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회 의장단이 조정
연례회의 제안서 제출 규칙	① 과학위 조언이 불필요할 경우 연례회의 1개월 전까지 제출 ② 과학위 조언이 필요할 경우 연례회의 1주 전까지 제출 ③ 연례회의 중 제안서 제출은 관련 의장·CPC와 협의 필요
회의록 작성자 지원	① 사무국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CPC들의 회의록 작성자 및 보조자 지원을 장려 ② CPC들의 지원이 없을 경우 예산 가용성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고용

3. 2023년 ICCAT 주요 회의 일정

회의명	회의 일시	회의 장소
EMS 작업반 회의(1차)	2.15	화상회의
패널2 회기간 회의	3.7~10	스페인
패널1 회기간 회의(1차)	3.27~31	포르투갈
근로기준 작업반 회의	5.31	화상회의
CDS 작업반 회의	5.5	화상회의
IMM 작업반 회의	5.6~8	화상회의
eBCD 기술작업반 회의	5.9	화상회의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6.19~23	포르투갈
EMS 작업반 회의(2차)	9.7	화상회의
이행위원회	11.11~12	이집트
제28차 정기회의	11.13~20	이집트

* 제24차 특별회의('24년) : 사이프러스, 제29차 정기회의('25년) : 코트디부아르